

국가보안법 개폐 공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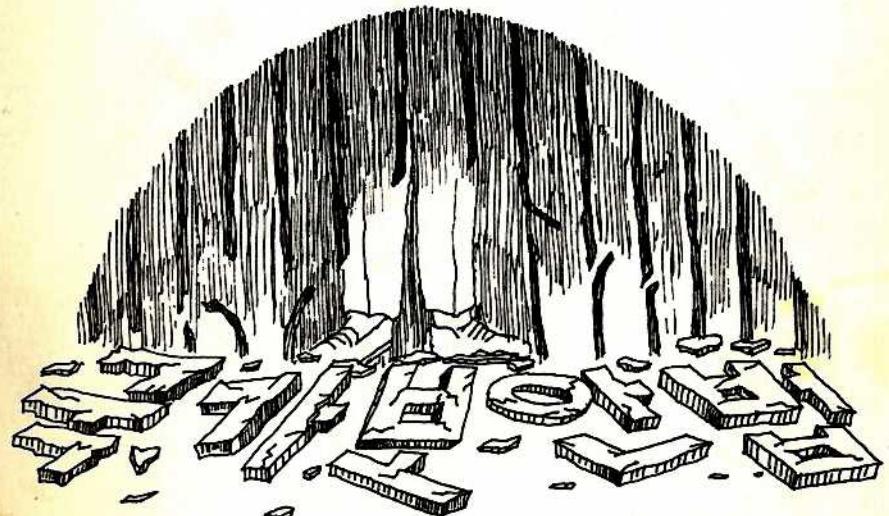
■ 주 제

1. 남북합의서의 법적효력과 국가보안법
2.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입장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

어떠한 개정이나 대체입법이 아닌 완전한 철폐를 위하여, 진정 대중을 기반하여, 대중과 함께 힘차게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 대한성공회 전국 정의실천 사제단
- 민족자주 평화통일 전국 중앙회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 민주화실천 가족운동 협의회
- 민중회의 준비위원회
- 불교인권위원회
- 사노맹시건 관련 가족대책위
- 사회주의 연구회
- 운석양 후원사업회
- 임수경 후원사업회
- 전국 민주화운동 유가족 협의회
-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 한국 여신학자 협의회
-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 ls석방과 수배해제를 위한 공대위



NSL.1.31

1992년 6월 5일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582-9825)

참여연대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차 례

■인사말

반생명 반도덕적 반민주적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지선(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 공동대표) • 1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의 건설과 현황

• 5

■주제발표

1. 합의서 정신에 역행하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 박석률(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 9

2. 남북합의서와 국가보안법

- 유선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13

3. 국가보안법의 논리적 근거결여와 폭력성

- 배동인(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25

■자료

1. 국가보안법에 관한 질의서와 답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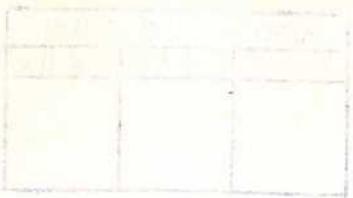
- 국가보안법에 관한 질의서 • 33

- 법무부 답변 1, 2 • 42

- 대통령에 대한 공개질의 • 49

2. 국가보안법 전문

• 54



■ 인사말

반생명 반도덕적 반민주적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 공동대표 지 선

먼저 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한 공청회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의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해 주시기 위해 나와주신 각계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합장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생각컨대 자본주의 사회나 사회주의 사회나 그 어떤 주의주장을 내세우는 사회든지간에 개인이나 단체 민족 등 인류 전체에 가장 귀중한 것이 자주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 평등, 평화, 사랑, 행복, 번영, 희망, 민주, 통일도 이 자주성이 말살된 상황속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역사는 이 자주성 옹호 투쟁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 나라와 민족의 장래(안정과 행복과 번영 등)가 보장되려면 첫째로 갖춰져야 할 기본요건이 1국가 동질 통치체제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는 멀리는 삼국시대부터 가까이는 47년간이나 1국가 형태가 아닌 상태에서 남북은 상호 반국 반족의 반신불수 사상으로 굳어졌지요. 한쪽은 냉전 멸공 반복 이데올로기에 길들여졌고 또 한쪽은 그것에 반대하는 체제-분단조국의 이와 같은 현실(민족모순=계급모순)속에서 생

겨난 4반(반민족, 반민중, 반민주, 반통일)의 비인간적 구시대적 악법들이 판을 치면서 그 가운데서도 국가보안법이 역대 독재정권 연장의 보도가 되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세계는 많이 변했고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동서화해, 긴장완화, 평화공존, 시장경제, 민주번영이라는 흐름이 본질적으로 보아 비록 거짓의 소지는 많으나 그래도 세계는 역사발전의 전례없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땅에도 87년 이후 지금까지 형식적이긴 하지만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태우씨는 6·29선언에서 8개항의 중요한 민주화로 가는 개혁의 요지를 발표했었고 그것이 지금은 다 필요없는 사기에 불과한 옛말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대통령 취임식에서 '물질의 성장과 안보를 앞세워 자율과 인권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힘으로 억압하거나 밀실의 고문이 통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90년 6월 통일에 관한 특별 담화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은 소모적인 대결책을 지양하고 북한을 민족공동체의 일환으로, 또 선의의 동반자로 인정할 방침이다.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학자, 체육인 및 학생등 남북동포들이 자유롭게 경계선을 넘어 왕래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 인사들의 접촉을 규제하고 있는 현재의 법체계는 변경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현행 국가보안법이 남북대화를 촉진하는데 있어 장애가 된다면 이를 개정할 용의가 있다'라고 선언해서 분단극복과 민족문제, 인권과 반민족 반민중적 탄압의 악법 극복에 관한 문제에 대해 언급해 왔습니다. 우리 애국세력은 이 말을 믿고 범민족 대회(통일)나 민중생존권(민주) 문제로 수없이 활동해 왔으나 노태우 민자당 지배권력은 민족민중세력의 활동을 온갖 불순 명목으로 억압해 왔고 몇천명을 탄압 구속해오고

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최근에는 남북이 유엔 동시 가입이 됐고 <남북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까지 발효시키면서도 일제시대 때부터 사용해오며 이러저러한 반민족악법으로 개명되어온 이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민주인사들을 계속 탄압하고 있습니다. 민족적이고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애국민중세력만 철저히 소외시키면서 민주개혁(?)이나 경제개혁(?)이나 통일(?)도 제국주의의 예속이나 지배를 용인하는 비자주적 입장에선 자기들끼리만 하겠다고 떠들고 있으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나는 한 승려로서 구시대적 제국주의자들이나 그들이 만들어낸 독재자들의 이와같은 비인간적 반생명적 반평화적 악법이나 제도는 단호히 척결 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큰정치 새시대 운운하는 자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세계와 이땅의 안정과 행복과 번영, 자유, 평등, 평화를 통일을 짖밟고 파괴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우리의미래를 가로막는 자들이 누구였고 누구인가는 이미 세상에 알려진 바 그대로입니다. 죄지 부시 정권과 노태우 정권입니다.

나는 여기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모순들에 대해 또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인명이나 민족세력들의 엄청난 수난과 피해에 따른 전문적인 모든 구체적 문제들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세상의 인간들이 이 땅이 민족의 과거 현재에 걸린 모든 모순의 현실적 악의 질곡들은 불가항력의 절대 힘이나 어쩔 수 없는 평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극소수의 천재지변이 아니고서야 세상의 괴멸기가 아니고서야 그 이하 모든 고통의 모순들은 비인간들의 악행(업)에 의해 저질러 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문제만 문제삼아 해결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민주화 되기 위해서는 노동악법 교육악법 등이 철폐되고 우리사회 구석구석에 스며 있는 군사문화를 척결해야 하

고 민중생존권과 분단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첫 과제가 이 국가보안법 철폐입니다.

일인분의 인간적 양심이 있다면 민주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루 빨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자, 자주민주 통일세상을 만들자, 반생명 반도덕적 반민주적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살아있는 자(생명)들의 의무이고 이 악법으로 인해 죽어간 애국 민중들과 구국 영령들이 피맺힌 절규이다.

지선 합장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의 건설과 현황

1.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의 결성배경과 준비과정

미국의 조종에 의한 남한만의 단독선거로 들어선 이승만 독재정권에 의해 형법이 제정되기 5년전인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라는 이름으로 강행,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개악을 거듭하면서 지난 45년 동안 민주화투쟁과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최대의 도구로 작용해 왔다.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취지가 단독선거로 인한 분단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애국민중을 탄압하기 위한 것에서도 보여지듯이, 이 법은 수많은 양심수를 양산하면서 사상·표현(언론, 출판, 문화예술,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 노동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짓밟아 왔다. 특히 6공화국 들어 양심수가 5공화국의 3배를 넘고, 그 중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는 무려 41%로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 민주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세력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특히 지난 2월 19일자로 남북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국가보안법은 더욱 더 존재기

반을 상실하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 (이하 국보철 범투본)는 이처럼 남북합의서의 발효를 직접적 계기로 하여 통일을 지향하고 인권과 사상의 자유를 옹호하는 각계각층이 모여 지난 2월 14일 향린교회에서 준비위를 결성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벌여왔다. 2월 19일 남북고위급회담 시기에 맞추어 서울구치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3월 13일에는 '남북합의서와 국가보안법'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하였다. 또 청와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발송, 대국민 선전전 등의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2.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의 결성과 진행사업

'국보철 범투본'은 대국민 선전사업과 조직확대를 거쳐 마침내 지난 4월 11일 동국대학교에서 결성식을 갖고 정식 출범하였다. 궂은 날씨 때문에 결성식 장소를 당초 예정되었던 만해광장에서 옥내로 옮긴 가운데 400여명이라는 결코 많지 않은(?) 인원이 참가하였지만 '국보철 범투본'의 공식 결성으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진행할 단초가 마련되었다. 그것은 '국보철 범투본'이 국가보안법 철폐에 이해를 같이 하는 광범위한 종교, 시민, 민족민주단체가 결집하여 이 투쟁을 더욱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벌여나가는 틀로 자리매김되었기 때문이다.

'국보철 범투본'은 결성 이후 첫사업으로 5월 4일 '법무부 담신에 대한 재질의서'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고, 5월 6일에는 제 7차 남북고위급회담 시기에 맞추어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제 2차 결의대회'를 서울구치소 앞에서 진행하였다. 또 5월 23일에는 최

근 연이은 국가보안법 적용 구속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와 정치·사상의 자유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3.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향후 사업계획

'국보철 범투본'은 광범한 대국민선전과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 투쟁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가보안법 개폐 공청회

국가보안법에 대한 각 정당, 제단체의 입장을 검토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국보철 범투본' 활동소식지 발간

각 단체 회원과 국민대중을 대상으로 '국보철 범투본'의 활동 홍보,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 국가보안법 해설, 남북합의서와 국가보안법, 조국통일과 국가보안법 등의 내용을 담아 월간으로 발행 한다.

3)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1000인 선언

사회·종교·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조직하여 1000인 선언을 발표한다.

4)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국회 앞 시위

남북합의서가 발효된 조건에서 국가보안법이 법으로서 효력을 상실했음을 친명하고 국회에서 그 폐기절차를 밟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 '국제법률가위원회(ICJ)' 조사단 초청

1954년 제네바에서 '법의 지배를 통한 인권신장'을 목표로 설립된 '국제법률가 위원회' 조사단 초청을 통해 사상 유례없는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국제적으로 폭로하고 국보법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를 다진다.

6) 국가보안법 피해자 신고센타 운영 및 피해자 보고대회

전국단위 조직이 중심이 되어 국가보안법 피해자 신고센타를 운영하여 1948년 국가보안법 제정이래 현재까지의 인권침해 상황을 취합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7)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문화제

국가보안법에 의해 유린되는 인권의 실상, 장기수·통일인사 문제,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유린,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의 본질 등을 문화예술의 형식으로 담아낸다.

이외에도 '국보철 범투본'은 국가보안법 철폐 강연단을 조직하고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통일에 국가보안법 만큼 장애가 되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투쟁하지 않고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이 당위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을 갖고 광범위한 국민적 운동을 일구어 낼 때 실질적인 철폐와 인권신장, 민주, 통일의 새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주제발표 1

합의서 정신에 역행하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박석률

남북합의서가 채택되어 7천만의 통일에의 부푼꿈이 꽃망울로 터져오르려 하는 지금도 철을 모르는 국가보안법의 시린바람이 모처럼의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를 그르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그 뿌리를 일제의 치안유지법에 두고 있고 민족분열을 법제화하는 장치로 무소불위의 전횡을 자행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무고한 희생을 가져온 과거를 덮어놓고라도 국민대중들의 대부분도 반대하는 법을 가지고 분단반세기 민족의 숙원인 통일의 기로에서 조성된 민족화해와 단결의 기운을 깨어내고 있는 현실은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대중들을 개탄하게 한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존속의 문제는 지난 2월 채택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대해 남한측이 이행의 의지가 회박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어서 더욱 우리를 우려하도록 하고 있다.

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해 야당과 학계, 재야등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이라고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정부당국은 공동성명

내지 신사협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여 국민들의 분노와 의구심을 가중 시킨바 있다. 7·4남북공동성명을 둘이켜 볼때 그것이 정권당국의 자기 보존을 위한 정치적 기만으로 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4성명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갈라져있던 남북격례가 최초로 함께 통일을 이루기 위한 통일대회의 장에서 만나고 그 성과로 일궈낸 것이며 남, 북 특정정파나 계층의 이해를 뛰어넘어 민족의 입장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기본 입장을 세워냈다는 것으로 하여 지금까지도 민족통일의 기본강령으로 남북한 주민들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통일과 반통일의 구분이 되어왔다.

남북합의서는 법률해석상의 문제를 떠나 분단구조에서 온갖 고통의 감수를 강요당하면서 통일의 그날을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고 이를 위해 아낌없이 퍼흘려온 한국민중의 염원과 투쟁의 결실일 뿐만아니라 남북주민을 대표하는 책임있는 당국자간의 오랜 논의와 토론의 결과로 합의된 것이라 할 때 이를 조속히 이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남북합의서가 신사협정이라는 법무부 발표는 남북합의서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이행에 대한 책임있는 약속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는 우려를 최근 국보법에 의한 구속, 수배자가 급증하는 현실속에서 다시금 하게 된다.

남북합의서는 남과 북이 통일을 향해 나아갈 길을 밝힌 기본 강령이다. 정부당국은 이의 실현을 보장하는 통일대화에 민족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자주적입장을 굳게하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하며 합의서의 기본정신에 저촉되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악법을 조속하게 폐기시켜야 한다. 야당 역시 합의서의 실현을 우선의 과제로 놓고 이것의 실증적 확인을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애국통일인사의 석방을 통해 해나가려는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통일열기에 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겨레가 모두 통일을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옮겨가는 마당

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회대의 악법을 통해 민족민주진영의 통일운동을 막아내려는 기도는 포기되어야 한다. 누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을 적용대상이고 누구는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라는 현행 국보법의 적용 기준은 정부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려우며 통일대화를 독점하여 정권안보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뿐이다.

우리는 애국민중세력의 통일의 열망이 높아질 때마다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통일의 쌩을 싹둑싹둑 잘라오던 기억을 잊을 수 없다. 그러나 70년대 유엔동시가입을 주장하였던 교수가 육살이를 하고 86년 통일이 국시라는 야당의원이 끌려가는 세월 속에서도 통일과 평화를 향한 민족의 염원은 구체적인 통일로의 진전을 하나하나 이루어 왔다. 이것이 우리의 현대사이다. 또 세계정세는 어떠한가. 더이상 동서진영의 이데올로기의 장벽은 무너진지 오래가 아닌가. 뿐만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평화체제를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행해지고 있는 마당에서 정권당국의 태도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악법이 계속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의 진로를 가로막는 한 국가보안법을 어겨서라도 극복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 특히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조속히 단행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권당국이 어떻게 민족의 통일의 장에서 떳떳하게 나설 수 있겠는가? 또 그런 정권당국의 창구단일화에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합의서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장에서 국민대중들과 함께 할 것을 이미 결의한 바 있다.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거스르는 민자당을 심판하고자하는 국민의 열망으로 태어난 14대 국회에서 그 어느 사안보다 먼저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방도가 주장되고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전국연합을 비롯한 모든 양심 세력은 이를 이루어내는 투쟁의 장에서 하나로 나서야 할 것이다.

■주제발표 2

남북합의서와 국가보안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 선 호

1. 의의 및 경과

이른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합의서라한다)는 전문, 제1장 남북화해(제1조~8조), 제2장 남북 불가침(제9조~14조), 제3장 남북 교류협력(제15조~23조), 제4장 수정 및 발효(24조, 25조)로 구성되어 1991. 12. 13. 제5차 남북 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과 북남 고위급 북측 대표단 단장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사이에 잠정적 협정형식으로 서명되어 1992. 2. 19.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같은 대표들 사이에서 발효에 필요한 내부절차를 알리는 내용의 통지문을 교환함으로써 발효되었으며 동년 5. 7. 제7차 본회담에서는 위 합의서의 이행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 대표자들 사이에 군사 경제사회 문화 교류 협력 공동위원회의 3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합의’에 도달되어 있고 장차 금년 9월로 예정되어 있는 제8차 본 회담에서는 위 각 공동위가 할 일을 담을 각 부속합의서의 챕터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이다.

2.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남북합의서와 국가보안법과의 관계를 조명하기 위하여는 남북합의서의 법적성격이 먼저 규명되어야 하며 그것은 남북합의서를 조약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조약이라 할 경우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그 체결및 비준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인정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합의서 전문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라고 명기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지칭하고 있는 특수관계의 성격여하가 문제시 된다.

① 유래

이를 밝히기 위하여 금번 남북합의서의 모델이 된 1972. 12. 조인된 ‘동서독 기본조약’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동 조약은 평화유지, 국경불가침을 통한 긴장완화, 주권존중, 무력포기, 인도적 문제의 협력을 위하여 이데올로기적 논쟁을 유보할 것을 천명하고 있고 본문 10개 항목은 상호동등권 및 정상화된 선린관계(1조), UN현장의 목적 및 원칙의 존중(2조), 무력포기와 경계선 존중(3조), 단독 대표권의 포기(4조),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정신존중 및 군비축소(5조), 영역한정의 원칙 및 독립, 자주성의 존중(6조), 협력 및 사회개방(7조), 상주대표부의 설치 및 교환(8조), 기결조약의 상호존중(9조), 효력발생(10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서독은 기본조약체결을 통해 국제적 차원에서는 동독의 숙원인 국가

승인을 함으로써 동독에 대한 대외관계 봉쇄를 해소해 주는 한편 민족내부적으로 관계 정상화를 통해 양독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넓히는 계기로 삼았다.

기본조약전문의 국경불가침, 주권존중 무력포기 등은 서독으로부터 국제법적인 국가승인을 받고 싶어하는 동독의 요구를 승인한 것인 반면에 주권승인이라는 말대신에 주권존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양독간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임을 못박고 있다. 이는 대외적으로는 각자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2개의 주권국가, 안으로는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를 규정한 잠정적 협정이라고 할 것이며, 우리의 남북합의서 역시 동서독 기본조약에 준하여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대외적으로는 남북상호간 국가성을 인정하되(제1조)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Recognition) 존중(Respect) 다만, 남북상호간에 내부적으로 특수관계의 설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이는 특히 민족내부의 교류에 있어서 통상 국가간의 교역에서 적용되는 관세규정 등 경제규정을 초월해야 되는 점이 통일지향적 과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남북합의서는 위와같은 남북간의 특수성이 있기는 하나 북한을 대외적으로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전제에 입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법적성질이 조약에 준하는 것으로 국내의 대다수의 학자들은 보고 있다.

국내의 학자들이 특히 남북합의서의 형식에 근거하여 남북합의서를 조약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남북합의서는 보통의 국제법상의 조약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남북한이 이미 유엔에 가입하여 대외적으로 주권국가로 공인받아 조약체결의 당사자 능력을 갖추었으며 남북합의서가 조약체결권자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그 내용이 가능하고 적법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절차 중 상당부분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② 국회의 동의절차에 관하여

그러나 이에 대하여 조약이 그 비준에 필수적으로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남북합의서가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발효한 점을 들어서 남북합의서가 행정협정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소수의 학설도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96조제1항은 조약이 아니더라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을 국회가 그 비준에 관한 동의권을 갖게 되어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도 그 발효에 앞서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남북합의서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은 그 법적성격의 규명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금번 남북합의서의 체결에 있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바라는 국민의 여론이 있었음에도 그것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은 그동안의 우리의 통일정책이 지나치게 정부의 독점하에 위로부터 하향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온 관행과 무관하다고 사료된다.

이 점은 북한의 형식상이라고는 하지만 남북합의서의 비준에 앞서 최고인민회의 동의 절차를 거쳤던 사실과도 비교되고 있다.

③ 당국의 유권해석에 관하여

남북합의서의 법적성격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은 1992. 4. 9 지선스님 외 7인이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한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남북합의서는 헌법 제60조제1항 소정의 조약이 아니라 남북사이에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하고 있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변란할 목적으로 대남 적화 활동을

하여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되는 것은 남북합의서의 채택과 별개의 문제」라고 회신하였다가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생각되었던지 1992. 4. 30일자로 추가회신을 내어 남북합의서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남북 내부간의 특수한 관계를 과도적으로 규율하는 문서이므로 헌법 제6조제1항, 제60조제1항에서 말하는 조약이라고 볼 수 없으나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의 정치적 실체간에 유효하게 체결되어 발효된 남북간의 합의 문서이므로 쌍방은 그 구속력을 부인할 수 없고 합의서에 기한 제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 답신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회신과 추가회신의 내용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당국도 그 입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스스로 이중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④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남북합의서가 조약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헌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인정될 것이고 국제법은 국내법보다는 우선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고 있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는 법의 정신에 비추어도 남북합의서의 효력은 국가보안법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의 효력의 문제는 순전히 법이론상의 문제이고 법의 적용상에 있어서는 상위법이 하위법을 즉시 개폐하는 힘을 당연히 갖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법을 운용하는 주체가 현실적으로 모순 귀속되는 법규 상호간의 모순을 어떠한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 하는 또다른 별개의 과제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하위법인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상위법인 헌법상의 기본권보장

규정을 침범하는 현실이 있을 수 있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점이다.

그러면 이러한 법규 상호간의 조정은 어떠한 방식을 통하여 실현되는가 그것은 남북합의서와 국가보안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의 완화를 통하여 종래에는 동법의 폐지조치에 이르는 것일 것이다.

다만 그에 소요되는 기간의 단축 여부는 남북관계의 변화정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국민의 실천의지등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위와같은 조정이 조속히 요구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이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위하여 무력도발과 간접침략을 계속하여 왔던 냉전시대와 북한과 이를 추종하고 지원하는 세력이나 집단을 상정한 것임은 1958. 12. 26. 법률 제500호로 이루어진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바 그 내용 일부를 보면 「현행 국가보안법은 … 현재 북한괴뢰정권의 전쟁에 의하지 아니한 침략을 의미하는 가장 평화통일공작을 주임무로 하는 간첩과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천태만상의 범죄를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이 결여되어 …」 점을 보더라도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이 냉전시대의 북한을 상정하고 있음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남북합의서의 면면은 반국가단체 개념이 갖는 위와같은 전제들을 송두리채 무더뜨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⑦ 남북합의서 서명의 주체는 자연인이 아닌, 대한민국헌법상 법적 대표성이 인정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간에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상부의 명을 받들어’ 개인자격으로 발효된 7·4남북공동성명과는 우리 헌법상 법적대표성과 권한을 갖고 있는 국무총리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당연히 국내법으로

서의 효력을 갖는다.

㉡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국무총리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간에 서명된 위 남북합의서는 “남과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개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인종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가사 그동안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과 ‘현정권을 폭력으로 타도’ 하여야 한다는 기본전략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남북합의서의 서명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이를 포기하였으며 또 이를 대한민국 정부대표자가 공식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또 위 남북합의서는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도 더 이상 적대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첫째, 남과 북은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였다. 위 남북합의서 전문 및 제1조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하고, 제2조는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남과 북이 상호 실체를 인정하였다. (Recognition은 국제법상 ‘국가승인’을 의미함)

따라서 북한을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

둘째 북한을 불법조직된 ‘반국가, 단체’로 볼 수 없다. 위 남북합의서 제3조는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는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는 ‘남과 북은 현 정권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는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

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9조는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는 '남과 북은 의견 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그 합의하에 남북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할 것을 참여한 것임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북한을 더 이상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노태우 대통령은 위 남북합의서가 서명된 다음날인 1991. 12. 14.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들인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3부요인과 여야대표, 헌법재판소장을 청와대로 초치해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번 고위급회담 결과 분단 46년간 '단절과 대립'의 남북관계를 '교류,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고 냉전을 종식시키는 전기를 이룩해 낼 수 있었다."면서 "북한은 지금까지 통일 전선전략에 의한 '적화통일 노선'을 추구해 왔으나 합의서 서명을 통해 이같은 노선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고 특별히 강조한 바 있는데 이러한 통치권자의 의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북한을 더 이상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

⑤ 혹자는 남북한 총리가 남북합의서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북한이 여전히 반국가단체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 함은 그것이 '국가' 이나의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가사 그것이 '국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성격이 '정부를 참칭' 하

거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하여 결정되어 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이 각기 주권국가로 승인받은 사실과 별도로 남북 당사자 사이에서는 상호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고 합의했더라도 남북쌍방의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남북 쌍방이 인정하였으므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3개 공동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동합의서의 쌍방에 대한 구속력이 사실상 발휘되고 있음도 염연한 현실이다.

⑤ 국가보안법 운용상의 경직성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어쨌든 남북합의서의 벌효와 함께 그 규범성에 있어서 종전과 같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규범성이 상실되었거나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규범력이 약화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합의서가 서명된 이후에 우리의 국가보안법 운용현실에 있어서 위와같은 변화는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즉 국가보안법의 운용이 남북관계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극도의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자체는 현실과 규범사이에 극도의 괴리현상을 초래하여 국민들에게 규범자체와 법제도 전반에 대한 무시와 불신을 낳고야 말 우려가 크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지극히 비합리적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실례로 1991. 12. 13. 남북합의서가 채택된 이래 동월 말경부터 서울구치소 수감 국가보안법사건 관련자들 사이에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일환으로 재판거부에 관한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1992. 1. 7.

김종식 전대협의장등 전대협관련자에 대하여 중형이 선고되는 것을 기점으로 동일 제파피디그룹(이적단체)사건 관련자 고민택외 3인이 공판기일에 재판거부입장을 천명하였으며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일사건 관련자 16명과 전대협(이적단체 등) 관련자 10여명, 사노맹 관련자 10여명 등 조직사건 관련자 중심으로 국가보안법사건에 대한 재판거부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시국사건 관련 서울구치소 수감자들의 주류적 입장이 된 사례도 위와같은 국가보안법 운용상의 경직성이 낳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이루기 위하여서라면 그 전단계인 국가보안법의 완화된 적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3.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입장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점은 동법 조문 전반에 걸쳐 불명확한 개념으로 가득차 있고 처벌 규정에 있어 구성요건·요소, 특히 처벌대상인 행위요소를 구체화하지 아니한 채 이를 법 집행자에게 위임하고 있는 백지형법의 형태를 위한 결과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것이 구성요건으로 둔갑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이라든가 국가보안법이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 그 동안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사람에 따라 차별적으로 해석·적용되는 점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법개정에 의하여 개선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보아 그 위헌성과 반민주성이 감소되지 아니하므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1991. 5. 31. 개정된 국가보안법이 동법 제2조의 반국가단체의 개념

에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으나 이것이 개정전에 비추어 법 운용면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못한 점이라든지 동 법상의 금품수수(제5조 제2항), 잠입·탈출(제6조 제1항), 찬양·고무·동조(제7조 제1항), 회합·통신(제8조 제1항) 죄에 있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서 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요건을 추가하였으나, 이것 역시 위와같은 지정요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결과 이것이 여전히 법집행기관의 자의에 맡겨져 있으며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행위에 지정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상 국가보안법위반자로 처벌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으며 위와 같은 지정요건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인 것임으로 그 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실제적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법원이 동요건의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동조건의 존재는 객관적인 행위에 의하여 추정되게 되는 사태가 된다. 경우는 다르지만 대법원 판례는 「국가보안법 제7조제5항 위반의 죄에 대하여 그 법문이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등 이적표현물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나 위 목적은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일 것 까지는 필요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이적성을 띠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러한 표현물의 취득 등의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고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동조 제5항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음은 위와같은 주관적요소의 단순한 추가만으로 국가보안법의 폐해가 불식되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이 미온적 법개정만으로는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구체적 행위의 처벌'이 아니라 '막연한 위험성이나 반대의사의 표현'을 처벌하는 폐해를 불식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놓게 하며 위와 같은 우려는 대체입법의 경우에도 여전히 남게 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가보안법을 형법조항과 중복되는 부분은 당연히 폐기하여 형법의 규율에 맡기고 그 밖에 이적행위, 이적표현물에 관한 죄는 그 자체 사상, 양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 침해조항이므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며 잠입·탈출, 회합·통신 등의 부분도 시대적 상황에 맞게 그 규제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에 맡겨야 할 것이다.

결국 국가보안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발표 3

국가보안법의 논리적 근거결여와 폭력성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배동인

1.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으로 약칭)이 제기하는 문제는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와는 정면으로 상충된다는 정당한 판단으로부터 도출되는, 그것의 시대역행적 성격은 물론이려니와 한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자유민주주의체제 확립의 역사적 정당성의 배경에 놓여있는 근본문제, 즉 "국가가 국민의 사상이나 의견을 통제하거나 심판하는 것 자체가 인간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느냐?"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여기서는 국보법의 존재근거가 논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져보기로 한다.

2. 사상 또는 의견이 국가에 의하여 통제되거나 심판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의 의견의 성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모든 의견은 대체로 다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로 인지적 의견이다. 이것은 어떤 대상의 존재여부, 존재양상 또는 존재방식의 서술이나 설명에 관한 의견이다. 그것의 가치는 그 진리성, 즉 진리에의 접근정도에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의견이 참인지 또는 거짓인지는 그 의견의 내용이 그것이 다루고 있는 사실과 부합되느냐 또는 부합되지 않느냐에 따라 판별된다는 뜻이다. 둘째로 당위적 또는 규범

적 의견이다. 이것은 기존현상의 존재확인이나 존재방식의 서술이나 설명이 아닌, 기존현상에 대한 가치판단에 따라 보다 바람직한 현상으로의 변경을 논의대상으로 한다. 규범적 의견의 평가기준은 진리 이외의 가치들, 가령 〈선〉, 〈미〉, 〈평화〉, 〈정의〉 등의 실현을 지향함에 있어서 해당 문제의 당사자를 비롯한 사회구성원의 의견일치 또는 공통의견의 극대화의 정도에 있다. 따라서 규범적 의견의 가치는 그 정당성에 있다.

인지적 의견이 진리성 여부를 학문의 세계에서, 그리고 규범적 의견의 정당성 여부는 정치의 세계에서 규명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며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사회집단적 또는 국가적 의사결정 제도로서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보편적으로 채택되었다. 자유민주주의는 주권재민사상에 근거한 정치질서의 구성원칙으로서 국가의 형성과 운영이 국가구성원인 국민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는 국민의 의사형성과 의사결정이 자유롭고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이다.

3. 인지적 의견의 진리성 여부와 규범적 의견의 정당성 여부는 민주주의시대 이전에는 주로 종교적 권위자나 국가권력의 담지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견의 표출자체가 억압되거나 금지되기도 했다(한국에서의 극단적 예: 유신체제와 5공). 그러나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은 자기의 의견의 진리성 또는 정당성을 자유로이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의견에 관한 다툼은 불가피하다.

모든 인지적 의견과 관련된 분쟁은 원칙적으로 학문의 세계 안에서 문제시되는 의견의 원리성 여부가 어느 정도 판별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판단 기준인 진리는 객관적 또는 상호주관적 타당성을 속성으로 갖

추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인지적 의견의 진리성 여부에 대한 해답은 다음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로 귀결된다. 첫째는 진리성이 궁정되는 경우, 즉 참된 의견으로 판단되는 경우이고, 둘째는 진리성이 부정되는 경우, 즉 거짓된 의견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며, 셋째는 참인지 또는 거짓인지 확인될 수 없는 경우, 즉 모른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그러나 실제로 인지적 의견에 관한 다툼이 항상 그렇게 명쾌하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토론자의 시각에 따라 다양한 판단이 가능하며 문제시되는 이론(의견)의 표현방식의 불명확성이나 내용의 불충분성 때문에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고, 부분적 타당성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이며 상대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조만간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 보다 더 참된 의견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지적 의견에 관한 논쟁은 학문적 토론의 장에서 해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규범적 의견의 경우에는 전혀 다르다. 규범적 의견에 있어서는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며 보편타당한 판별기준이 설정될 수 없다. 욕구의 우선순위와 가치판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고 객관적으로 가장 옳은 의견을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범적 의견의 정당성은 상대적이며 가변적이다. 그것을 둘러싼 분쟁은 그 성격상 학문의 세계에서는 해결할 수 없고 특정 의견의 지지자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가 잠정적으로나마 결정될 수 밖에 없는데 이 해결의 장이 바로 정치의 세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지적 의견이나 당위적 의견의 다툼에 있어서 어느 경우에나 해당 의견의 절대적 진리성 또는 정당성이 주장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 근본 이유는 인간의 이성과 인식능력, 그리고 이의 산물인 지식과 지혜에는 한계가 있고 어떤 대상이든지 관찰자의 관심과

가치관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사회에서 인간의 의견을 어떤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그 진리성 또는 정당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인간이나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과학과 정치라는 삶의 두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밝혀진 하나의 보편적 진리이다. 현대국가에서 거의 예외 없이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은 이러한 보편적 진리에 근거한다.

4. 따라서 어떤 인간이나, 국가를 포함하여 인간이 만든 어떤 조직이나 기관도 인간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심판한다는 것은 적어도 오늘의 문명된 사회에서는, 특히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다. 만일 그러한 의견의 심판이나 정죄가 행해지는 사회나 국가가 있다면, 그것은 문명사회일 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일 수도 없으며 다만 야만사회 또는 전체주의 국가일 뿐이다.

한국에서 오늘날까지 국민의 특정 의견이나 사상이, 정치적 지배권력에 의해 그 합헌성이 매우 의문시되는 국보법과 같은 법률에 의거하여 사법적 심판대에 올려지는 것이 강요되어온 사실은 시대역행적이며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는 국민의 의견이 자유로이 형성되고 공개적이며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전체 국민의 의사로서 결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실시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국가의 기본과제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의견이 아무런 장애 없이 자유로이 표현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의견이 참된 또는 정당한 의견인가에 대한 해답은 국가 기관이 단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오로지 학문의 세계 또는 정치사회의 여론세계에서 공개토론판정을 거

쳐서 발견될 수 있을 따름이다.

국가의 최우선적 임무는 이 토론판정을 합리적으로 조성하고 강화시키는데에 있다. 국가기관이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상황의 당사자로서 토론의 장에 참여할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최종적인 해답을 미리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국민들이 수락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으며, 하물며 특정 의견을 단죄할 수는 없다. 국가와 국민 모두가 존중하고보호해야 할 지고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은 다른 의견을 가질 자유와 그것을 표현할 자유 없이는 공허할 뿐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사상범이라는 것은 자가당착으로서 성립될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하다.

5. 위에서 전개된 논거에 비추어 국보법은 그 폭력성 이외에는 어디에서도 하등 정당한 존재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국보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허용될 수 없는 의견, 즉 자기(정부) 의견만을 절대화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부인하는 입장에 근거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그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국가의 바람직한 정치체제나 경제체제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의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의 향방에 따라 해결 될 수 밖에 없으므로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정부는 주권자의 다수 의견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여 그 의견에 따라 문제해결의 절차를 역시 주권자의 의견에 따라 합리적으로 밟아나가는 일에 충실히해야 한다. 가령 국민 대수의 의견이 한국의 현재의 정치·경제체제보다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런 주권자의 의견이 초래하는 문제상황에 대해서는 주권자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에 정부는 그런 의견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 정부, 즉 집권계층이 주권자의 그러한 다수의견 찬성하지 않는다면, 정

부는 토론의 장을 열어 정부의견의 정당성을 주장함으로써 국민들이 종래의 의견을 자유의사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설득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정치형태에 대한 비판은 곧 적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처벌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그러한 비판의 원인이 되는 정부 자체에도 해당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비판과 어떤 형태의 사회주의 체제의 옹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선호하는 의견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국가체제의 선택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며 정부는 그 선택이 가장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자 료

1. 국가보안법에 관한 질의서와 답변서
2. 국가보안법 전문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이하 국보철 범투본)는 92년 3월 11일 ‘국가보안법에 관한 질의서’를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3월 23일 「국보철 범투본」으로 “질의서를 법무부로 이첩했다”는 정부합동민원실장의 회신이 왔고, 4월 9일 법무부장관 명의의 답신이 왔습니다.

이에 「국보철 범투본」은 5월 4일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대 대통령 공개질의를 다시 했고,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한편 법무부의 4월 30일자 추가회신이 「국보철 범투본」으로 5월 9일 도착했습니다.

■자료 1

국가보안법에 관한 질의서

1. 민주주의 및 국민기본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제헌헌법이래 8차례의 개헌을 거치면서 변함없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여 왔으나 유독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만은 침묵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사상과 이념의 다원주의에 입각해 있으며 다양한 사상·이념이 사상의 자유시장 속에서 어떠한 제한도 없이 평등한 경쟁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고지되고 국민들이 그 어느 것을 선택함으로써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정치원리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명제입니다.

우리의 헌법이 사상의 자유를 소극적으로 외면하고 있을 때 그 하위 법인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맹장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사회현상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내심에 형성되는 사상을 탄압하였고(사례: 83형 제5074호 속칭 의식화세미나사건, 73도 제3392호 속칭 일기장사건 등), 형성

된 사상을 유지하거나 자기사상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조차 폭력적으로
파괴하는데 앞장섰으며(국가보안법의 특별법인 사회안전법에 의한 사상
전향제도), 그 사상의 표현을 저지하여 왔습니다(사례: 90도 제1586호
속칭 홍성담씨사건 등 수많은 출판물의 제작과 반포·소지사건).

특히 사상의 자유가 외적으로 표현되는 단계에서 문제로 되는 표현의
자유(언론·출판, 문학·예술, 집회·결사)는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
고 있음에도 하위법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철저히 유린되어 왔습니다(사
례: 87고단 제503호 속칭 보도지침사건, 87고단 제3707호 속칭 녹두
서평사건 등).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성'이 없는 이른바 막
걸리보안법사건들에서 보듯이 억울하고 답답한 올분으로 인하여 취중에
자제력을 잃고 고함을 치거나 호기심에서 몇마디 한 것까지 처벌의 대
상으로 삼고 종교의 자유까지 억압하였습니다(사례: 89형 제57351호
속칭 민중불교운동연합사건 등). 또한 국가보안법은 정권의 반대자나
걸림돌이 되는 인사를 탄압하는 정권안보의 무기로 사용되었으며(사례:
1967년 김두환의원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1986년 유성
환의원 통일국시사건 등),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봉쇄하는 도구로 사용
되고 있습니다.

질의 : 대통령께서는 위와 같이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으며 헌법상
의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온 국가보안법의 존속 내지는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발효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1990. 7에 가입한 국제규약의 제18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에서는 모든 사
람은 간접받음 없이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발표할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의 종류를 불
문하고 규약에 승인된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고 또 이를 모든 개인에게
보장할 것을 약정하였습니다(국제규약 제2조).

그리고 이어서 정부는 1991. 7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
제규약 제40조에 따른 최초보고서'를 국제연합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개별적 사항' 중 제18조에서는 헌법상 양심의 개념을 일련의
가치관 내지 신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다시한번 확인하고 있
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의 '일반적 사항' 중 '규약과 국내법과의 관계'에서 규
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같은 국내법 사이에 상충되는 법률이 있다면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되
어야 하며, 신법과 상충되는 구법은 법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급히 개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규약과 상충되며 구법인 국가보안법은 '표현물을 제작·수
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취득한' 자나 특정사실을 '선전·고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규약 제19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행위자의 행위가 아닌 내면의 정치적 신념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사상과 양심, 정치적 견해, 신조를 근본
으로부터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법인 국제규약과 상충되는 이
법률은 마땅히 철폐되어야 합니다.

질의 가 : 정부는 위 보고서에서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적 제도가 국제규약(유보조항 제외)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위에서 보았듯이 국제규약 제18조, 제19조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을 전제로 보고한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국가보안법과 국제규약이 상충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나 : 정부는 위 보고서에서 검찰, 경찰 등 인권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각급 공무원에게 직무수행에 있어 국제규약의 정신이 철저히 실천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그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한편 국제규약이 발효된 이후 규약발효를 이유로 한 국가보안법관련사건 공소취소가 한 건도 없었고 오히려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 수가 증가(1989년 271명, 1990년 573명, 1991년 535명)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특정서적을 읽거나 문화공연을 한 것 등을 이유로 구속되는 사례(92고합 제58호사건 등)가 있는데 교육시간을 가진 것이 사실이라면 그 시간에 국제규약을 빠져나갈 구멍을 가르친 것은 아닙니까?

질의 다 : 정부는 위 보고서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소송실무에서 인권규약을 적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규약의 국내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보고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한편작년 1월에서 8월사이의 국가보안법사건 구속영장기각률이 0%를 기록하는 등 법원이 국가보안법사건에 심한 경직성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최근 법원에 공식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이적표현물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출판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한 사례(91노 제4263호사건)까지 있는데 위 보고서 상의 '긍정적'이라는 평가·보고를 철회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3. 북방정책과 관련하여

1989.12 몰타 미·소정상회담에서 '세계가 냉전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로 접어 들고 있다'고 선언한 이래 말그대로 세계는 격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따라 냉전의 시대는 가고 화해와 공존 그리고 평화의 조건이 성숙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도 평가리, 폴란드, 유고,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구소련 등과 수교하고 중국과 무역대표부를 설치하는데 합의하였으며 그들과의 교역량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제와 이념을 달리 하고 있으나 의연히 한 민족인 북한과도 공식·비공식 혹은 정치적·비정치적 교류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질의 : 대통령과 공안당국은 현재까지도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국가를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국가단체인 사회주의국가를 왕래하거나 그 나라 인사를 만난 사람들을 모두에게 국가보안법을 평등하게 적용해야 하며, 그 나라가 북한인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제6조 내지 제10조)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7조) 중 어느 하나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문익환 목사, 임수경씨와 정주영씨, 정원식 총리에서 보듯 저간의 사정은 그렇지 못했는데 대통령께서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원칙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폐기되었다고 공언할 수 있습니까? 한편 만일 사회주의 국가를 반국가단체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적대와 냉전의 산물인 국

가보안법을 형법 위에 옥상옥으로 잔존시켜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국제연합 남·북한 동시가입과 관련하여

검찰의 국가보안법사건 공소장에는 이 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음에도 한결같이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틀에 박힌 공소의 전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남한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이와같은 주장의 법적 근거로 1948. 12의 국제연합 총회결의 제195호 3 '대한민국의 승인 및 외국군대의 철수에 관한 결의'를 내세워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의의 제2항에 의하면 '국제연합 임시위원회가 감시 및 협의할 수 있었고, 코리아인민의 과반수가 거주하고 있는 코리아의 그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행정권과 사법권을 갖는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 이 정부가 코리아의 그 지역에서의 그와같은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 한다'고 하여 한반도 전역이 아닌 38도선 이남지역에 있어서의 유일합법정부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정이래 현재 까지 위와 같은 공소의 전제사항을 사용해 온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설혹 정부의 견해대로 과거에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있어 유일한 합법 정부였다고 하더라도 1991. 9 남·북한이 국제연합에 동시가입하여 국제법상 남·북한이 각기 관할구역 내의 주권국가임을 공인(국제연합 헌장 제2조 제1항, 제4항 및 제25조)받았으므로 이제 위의 국제연합 결의는 무효화되었으며 따라서 위와 같은 공소내용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까지도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법적 근거로 하여 공소를 제기(사례: 91고합 제1357호사건 등)하고 있습니다.

질의 : 정부에서는 남·북한의 국제연합 동시가입 이후 위의 국가보안법사건 공소의 전제에 대하여 재고한 일이 있었습니까? 만일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검토내용과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발효와 관련하여

지난 2.19 남·북한간에 그 문본을 교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 남북 합의서는 체결의 당사자능력(국제법주체의 하나인 분단체), 체결당사자의 대표권(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 각각 총리에 위임), 체결권자간의 하자없는 의사표시의 합치, 체결내용의 적법·가능성, 체결의 절차 등에 비추어 보아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닌 국제법상의 조약임이 명백합니다. 통일원에서 발간한 자료집(통일속보, 1991. 12. 16)에서도 남북합의서가 그 형식과 내용면에서 일반적인 조약의격식을 갖추었음을 물론 분단사상 처음으로 책임있는 당국자인 쌍방 총리가 직접 서명하였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전환을 의미한다고 언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동·서독간의 기본조약을 들어 설명을 부가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국내법들 중 새로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된 국제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체계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개폐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설혹 이

합의서가 조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2.19 특별담화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 발효된 합의서와 선언내용을 모든 성의와 노력으로 성실히 실천할 것을 국내외에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듯이 후속조치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북합의서는 제1장 제1조에서 '남북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4조에서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1조에서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 7. 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과 북이 각기 한반도에서의 단독대표권을 포기하고 영역한정의 원칙에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합의서의 발효시부터 남과 북은 서로를 반국가단체로 보지 않으며 정치적 실체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여 대외적으로는 국가로 인정하나 민족내부적으로는 잠정적 특수관계를 평화통일시까지 유지한다고 해석됩니다.

질의 : 민자당은 남북관계가 매우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남한에 대한 체제전복기도 가능성에 근본적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가보안법의 기본개념인 반국가단체규정과 범주 속에 북한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남북합의서는 한갓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여 공적인 법제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지 명시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전제하고 기소하였던 모든 구속인사를 즉각 석방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6. 국내법체계 정비를 위한 법정부적 특별기구 구성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은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도구이며 법제도적 측면에서 위헌적이고 형법과 중복되며 남북교류협력법 및 제반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국제법 등과 상충되기 때문에 즉각 완전히 철폐되어야 할 법률입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대통령께서도 지난 1991. 11. 30 남북합의서가 발효될 것에 대비하여 법무부가 주관하는 법정부적 특별기구를 구성하여 국내법 체계를 재정비하고 남북한 법률공동위원회의 설치도 북한 당국과 협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 기구에서는 당연히 무엇보다 먼저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 : 대통령께서는 이 특별기구가 단순히 정권적 차원의 밀실기구가 아닌가하는 국민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또한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용하기 위하여 정부기구가 아닌 범국민적 기구로 전면적으로 개편·운용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기구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면 특별기구로 하여금 기왕에 제기되었던 개정론, 대체입법론, 형법에로의 흡수론, 완전폐지론, 강화론 등의 의견을 국민들이 비교·검토할 수 있게 유관단체와 각 정당을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지시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답신 1

법 무 부

검삼 01254-42 (503-7055) 1992. 4. 9
수신 서울서초구 방배동 950-3 (고려빌딩4층) 지선외 7명
제목 민원 회신

귀하가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한 국가보안법관련 질의에 대
하여 별첨과 같이 회신합니다.

첨부 : 국가보안법관련 질의회신 1부. 끝.

법 무 부 장 관

1.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 국민의 기본권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요소로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으나,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의 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 이는 세계각국의 공통된 것입니다.
- 제한의 정도는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북한과 국내 좌익세력이 우리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각종 선동선전과 함께 폭력적 행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 합니다.
- 1991. 5. 10. 국회에서는 우리의 안보여건을 감안하면서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전향적인 내용으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에 변화가 없고 이에 동조하는 국내의 반국가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지키는 국가보안법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가입과 관련하여

- 위 국제규약과 국가보안법의 상충여부

-
- 위 국제규약이 양심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동 국제규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제1항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절대적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며 그 한계가 있습니다.
 -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표현행위를 규율하는 법규정으로는 타인의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음란물반포등(형법 제243조), 업무상 비밀누설(형법 제317조),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민법 제751조), 내란죄, 외환죄의 선동, 공안문란선동(형법 제90조 제2항, 제101조 제2항, 제120조 제2항) 등이 있습니다.
 - 국가보안법 제7조의 규정도 위와같은 견지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규정한 것으로 위 국제규약과 상충되지 아니합니다.
 - 또한 국가보안법은 개인의 사상이나 양심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직무교육내용

- 국제규약의 정신이 철저히 실천되도록 인권보장의 필요성, 인권보장을 위한 적법절차준수등에 대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국제규약 실효성 확보의 긍정적 평가 근거

- 대법원은 변호인의 접견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한 수사기관

-
- 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 헌법재판소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대한 찬양 고무등 행위를 규제한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과 관련하여 각 그 소정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움직임은 위 규약의 국내법적 실효성 확보에 긍정적인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 ### 3. 북방정책 및 법 적용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 국가보안법은 사회주의 국가전부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2조 제1항)
 - 정원식 국무총리,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북한방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으나, 임수경·문익환의 경우는 법절차를 위반하여 밀입북한데 대하여 의법조치한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 국가보안법은 국가변란을 기도하는 반국가활동으로 부터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지키는 법으로서 형법과는 그 목적과 적용범위가 다릅니다.

4. 남·북한 유엔동시가입과 관련하여

- 유엔 가입으로 가맹국 사이에 집단적, 묵시적 국가승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유엔의 확립된 관행이므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하더라도 남북한 상호간 국가 승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사실만으로 국가보안법규정의 해석 및 적용을 변경할 이유는 없습니다.

5. 남북합의서 발효와 관련하여

- 남북합의서는 헌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조약이 아니라 남북사이에 성의있는 이행을 약속하고 있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남북합의서 전문도 같은 취지)
- 따라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변란할 목적으로 대남적화 활동을 하여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되는 것은 남북합의서의 채택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6. 국내법 체계 정비와 관련하여

- 남북관계의 진정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는 그와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답신 2

법 무 부

검찰 01254-51 (503-7055) 1992. 4. 30
수신 서울서초구 방배동 950-3 (고려빌딩4층) 지선외 7명
제목 민원 회신

1992. 4. 9자 당부 검찰 01254-42호 민원회신과 관련하여
첨부과 같이 회신합니다.

첨부 : 추가회신문 1부. 끝.

법 무 부 장 관

- 남북기본합의서는 그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같이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남북 내부간의 특수한 관계를 과도적으로 규율하는 문서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 제6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조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의 정치적 실체간에 유효하게 체결되어 발효된 남북간의 합의문서이므로, 쌍방은 그 구속력을 부인할 수 없고 합의서에 기한 제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 청와대에 보내는 재질의서

대통령에 대한 공개질의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준비위원회)의 국가보안법에 관한 질의(1992. 3. 11)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1992. 4. 9)하였다.

“남북합의서는 헌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조약이 아니라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변란할 목적으로 대남적화활동을 하여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되는 것은 남북합의서의 채택과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나 학계·법조계와 야당은 남북합의서가 조약당사자의 체결능력(국제법주체의 하나인 분단체), 체결권자(대한민국 헌법 제73조 상의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96조 상의 주석), 체결당사자 간의 하자없는 의사표시 및 그 의사의 합치(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닌 평화적이고 자유로운 조건에서 공개적으로 체결), 조약내용의 실천가능성·적법성(쌍방의 준수의사 및 국내법정비 등의 후속조치 표명) 등에 비추어 조약임에 분명하고 합의서 대부분의 조항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일 경우 국회에 그 체결·비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북한측은 이미 1991.12.24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합의서를 지지·찬동하는 결정서를 채택하고 그 이틀 후에는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연합회의에서 남북합의서를 승인하는 등 우리의 국회동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고 남한측의 국회동의가 지연되는데 대하여 항의성 발언을 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대통령도 지난 1991.11.30 남북합의서가 발효될 것에 대비하여 법무부가 주관하는 특별기구를 구성하여 국내법 체계를 재정비하고 남북한 법률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북한 당국과 협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올해 2.19 특별담화를 통하여 합의서의 내용을 모든 성의와 노력으로 성실하게 실천하겠다고 국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내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제7차 남북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는 공동으로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한다.

1. 질의회신은 남북합의서의 기본정신이나 조항들이 국가보안법의 입법취지나 조항들과 상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남북합의서는 남과 북이 '분단된 조국'의 한편이며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동반자라는 전제 하에 제1조에서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3조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증상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 각종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를 구성 혹은 지원·찬양·고무·왕래하거나 그 구성원 등과 회합·통신하거나 이에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이 대남적화노선에 변함이 없고 우리나라를 변란한 목적으로 폭력적책동을 벌이고 있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합의서에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규정과 북한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보고 이와 교류·협력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서로 양립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2. 만일 남북합의서와 국가보안법이 전혀 양립할 수 없다면 남북합의서가 국가보안법과 어긋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

그리고 만일 양자가 부분적으로 상충한다면 남북합의서는 국가보안법과 상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행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상충하는 부분은 어떤 조항들인가.

한편 질의회신에서 '합의서의 채택과 북한이 반국가단체에 해당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한 것은 북한이 정부에게는 반국가단체가 아니지만 일반국민에게는 반국가단체라는 의미, 즉 국가보안법이 정부측 인사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국민에게만 적용되는 법률이란 의미인가.

3. 북한은 남북합의서의 성격에 대하여 그들의 공식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하거나 주장한 바가 있는가. 만일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북한측이 전달하거나 주장한 남북합의서의 성격은 조약인가, 신사협정인가. 그리고 북한측의 공식입장과 우리정부의 공식입장이 서로 다르다면 남북합의서가 사실상 그 문구와는 달리 남·북한간에 의사의 합치, 즉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아 남한에 대하여 전혀 구속력이 없는 문서인가.

4.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북한이 반국가단체로서 우리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각종 선전선동과 함께 폭력적 책동을 벌이는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일 그렇다면 현재 정부가 합의서의 규정에 따라 남북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를 하고 협력하려는 행위나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반국가단체의 무장폭력조직과 협력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헌법 제60조에 규정된 우리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대통령이 이렇듯 국가적으로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남북합의서를 헌법에 규정된 국민적 동의절차인 국회의 비준동의에 부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5. 질의회신은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국제인권규약(B규약)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라는 것을 전제로 제정·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남북합의서의 챕터과 별개의 문제이며 현재의 남북관계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포함한 국내법 정비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및 이를 전제로 시행되고 있는 사상전향제도(수형 자처우분류기준·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 보안관찰법 등이 명백히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어 국제인권규약과 상충할 뿐만 아니라 민족통일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과 합의한 남북합의서의 정신 및 그 조항과도 상충한다. 이것들은 북한

의 주장과 유사한 정치적 신념을 표현하는 일체의 행위(찬양·고무·동조·표현물소지 등)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 신념 혹은 타인의 국가보안법 위반사실을 안것에 대하여 침묵(사상전향, 불고지)한 것에 대해서까지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 남북합의서에 따른 교류와 협력(회합·통신·잠입·탈출·편의 제공 등)조차도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등 국내법의 일부는 남·북한간 합의의 적법성에 중대한 흠이 되고 있다.

현재 국제연합 인권이사회는 남한의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검토를 앞두고 있으며 남북한은 합의서에 따른 각종 공동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남북합의서의 하자로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등의 폐지를 계속 거부하여 나라의 국제적 위신을 실추시키고 조국의 통일을 거스른 인물로 역사에 남을 것인가.

1992. 5. 4.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자료 2

국가보안법 전문

國家保安法

(1980年 12月 31日)
法律第3318號全文

改正 1987. 12. 4. 法3993號 1991. 5. 31法4373號

- 第1章 總 則 ……(第1條~第2條)
 第2章 罪와 刑 ……(第3條~第17條)
 第3章 特別 刑事訴訟規定 ……(第18條~第20條)
 第4章 報償과 援護 ……(第21條~第25條)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等】 ①이 法은 國家의 安全을 危殆롭게 하는 反國家活動을 規制함으로써 國家의 安全과 國民의 生存 및 自由를 詐보함을 目的으로 한다.
 ②이 法을 解釋適用함에 있어서는 第1項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필요한 最小限度에 그쳐야 하며, 이를 擴大解釋하거나 憲法上 보장된 國民의 基本的人權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新設 1991. 5. 31)

第2條 【定 義】 ①이 法에서 “反國家團體”라 한은 政府를 假稱하거나 國家를 延亂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國内外의 結社 또는 集團으로서 指揮統率體制를 갖춘 團體를 말한다. (改正 1991. 5. 31)

②削除(1991. 5. 31)

第2章 罪와 刑

第3條 【反國家團體의 構成등】 ①反國家團體를 構成하거나 이에 加入한 者는 다음의 別에 따라 處罰한다.

1. 首魁의 任務에 종사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2. 幹部 기타 指導的 任務에 종사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5年以上的 懲役에 處한다.
3. 그 이외의 者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他人에게 反國家團體에 加入할 것을 勸誘한 者는 2年以上的 有期懲役에 處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④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以上的 有期懲役에 處한다.

⑤第1項第3號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0年以下の 懲役에 處한다. (改正 1991. 5. 31)

第4條 【目的達行】 ①反國家團體의 構成員 또는 그 指令를 받은 者가 그 目的達行을 위한 行爲를 한 때에는 다음의 别에 따라 處罰한다. (改正 1991. 5. 31)

1. 刑法 第92條 내지 第97條·第99條·第250條第2項·第338條 또는 第340條第3項에 規定된 行爲를 한 때에는 그 각 條에 정한 刑에 處한다.

2. 刑法 第98條에 規定된 行爲를 하거나 國家機密을 探知·蒐集·누설·傳達하거나 仲介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處罰한다.

3. 軍事上 機密 또는 國家機密이 國家安全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항에게만 知得이 허용되고 敵國 또는 反國家團體에 秘密로 하여야 할 사실, 봉건 또는 知識인 경우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4. 가급의 軍事上 機密 또는 國家機密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7年以上的 懲役에 處한다.

3. 刑法 第115條·第119條第1項·第147條·第148條·第164條 내지 第169條·第177條 내지 第180條·第192條 내지 第195條·第207條·第208條·第210條·第250條第1項·第252條·第253條·第333條 내지 第337條·第339條 또는 第340條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行爲를 한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以上的 懲役에 處한다.

4. 交通·通信, 國家 또는 公共團體가 사용하는 建造物 기타 重要施設을 破壊하거나 사람을 略取·誘引하거나 艦船·航空機·自動車·武器 기타 物件을 移動·取去한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以上的 懲役에 處한다.

5. 刑法 第214條 내지 第217條·第257條 내지 第259條 또는 第262條에 規定된 行爲를 하거나 國家機密에 속하는 藝類 또는 物品을 損壞·隱匿·偽造·變造한 때에는 3年以上的 有期懲役에 處한다.

6. 第1號 내지 第5號의 行爲를 壴動·宣傳하거나 社會秩序의 混亂을 造成할 우려가 있는 事項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捏造하거나 流布한 때에는 2年以上的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③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以上的 有期懲役에 處한다.

④第1項第5號 및 第6號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0年以下の 懲役에 處한다.

第5條 【自進支援·金品收受】 ①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를 받

은 者를 支援할 目的으로 自進하여 第4條第1項 각 條에 規定된 行爲를 한 者는 第4條第1項의 例에 의하여 處罰한다.
 ②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의 支配下에 있는 地域으로부터 渗入하거나 그 地域으로 脱出한 者는 10年以下の 懲役에 處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④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0年以下の 懲役에 處한다.

⑤削除(1991. 5. 31)

第6條 【潛入·脫出】 ①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의 支配下에 있는 地域으로부터 渗入하거나 그 地域으로 脱出한 者는 10年以下の 懲役에 處한다. (改正 1991. 5. 31)

②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의 指令를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目的遂行을 協議하거나 協議하기 위하여 渗入하거나 脱出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5年以上的 懲役에 處한다.

③削除(1991. 5. 31)

④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改正 1991. 5. 31)

⑤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7年以下の 懲役에 處한다.

⑥第2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以上的 有期懲役에 處한다. (改正 1991. 5. 31)

第7條 【讀揚·鼓舞等】 ①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를 받은 者의 活動을 讀揚·鼓舞·宣傳 또는 이에 同調하거나 國家變亂을·宣傳·煽動한 者는 7年以下の 懲役에 處한다. (改正 1991. 5. 31)

②削除(1991. 5. 31)

③第1項의 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團體

를構成하거나 이에加入한者は 1년이상의有期懲役에處한다. (改正 1991.5.31)

④第3項에規定된團體의構成員으로서社會秩序의混亂을造成할우려가있는事項에관하여허위사실을捏造하거나流布한者는 2년이상의有期懲役에處한다. (改正 1991.5.31)

⑤第1項·第3項또는第4項의行爲目的으로文書·圖畫기타의表現物을製作·輸入·複寫·所持·運搬·頒布·販賣또는取得한者는 그각項에정한刑에處한다. (改正 1991.5.31)

⑥第1項또는第3項내지第5項의未遂犯은處罰한다. (改正 1991.5.31)

⑦第3項의罪를犯할目的으로豫備 또는陰謀한者는 5年이하의懲役에處한다. (改正 1991.5.31)

第8條【會合·通信等】①國家의存立·安全이나自由民主的基本秩序를危殆롭게한다는情을알면서反國家團體의構成員또는그指令을받은者와會合·通信기타의방법으로連絡을한者는 10年이하의懲役에處한다. (改正 1991.5.31)

②削除(1991.5.31)

③第1項의未遂犯은處罰한다. (改正 1991.5.31)

④削除(1991.5.31)

第9條【便宜提供】①이法第3條내지第8條의罪를犯하거나犯하려는者라는情을알면서銃砲·彈藥·火藥기타武器를제공한者는 5年이상의有期懲役에處한다. (改正 1991.5.31)

②이法第3條내지第8條의罪를犯하거나犯하려는者라는情을알면서金品기타財產上의利益을제공하거나潛伏·會合·通信·連絡을위한場所를제공하거나기타의方法으로민의를제공한者는 10年이하의懲役에處한다. 다만,本犯과親族關係가있는때에는그刑을減輕또는免除할수있다. (改正 1991.5.31)

③第1項 및 第2項의未遂犯은處罰한다.

④第1項의罪를犯할目的으로豫備 또는陰謀한者는 1년이상의有期懲役에處한다.

⑤削除(1991.5.31)

第10條【不告知】第3條, 第4條, 第5條第1項·第3項(第1項의未遂犯에한한다)·第4項의罪를범한者라는情을알면서搜查機關 또는情報機關에告知하지아니한者는 5年이하의懲役 또는 200만원이하의罰金에處한다. 다만,本犯과親族關係가있는때에는그刑을減輕또는免除한다. (改正 1991.5.31)

第11條【特殊職務遺棄】犯罪搜查또는情報의職務에종사하는公務員이이法의罪를犯한者라는情을알면서그職務를遺棄한때에는 10年이하의懲役에處한다. 다만,本犯과親族關係가있는때에는그刑을減輕또는免除한다.

第12條【誣告,捏造】①他人으로하여금刑事處分을받게할目的으로이法의罪에대하여誣告또는偽證을하거나證據를捏造·潤減·隱匿한者는그각條에정한刑에處한다.

②犯罪搜查또는情報의職務에종사하는公務員이나이를補助하는者또는이를指揮하는者가職權을濫用하여第1項의行爲를한때에도第1項의刑과같다. 다만,그法定刑의最低가2年未滿일때에는이를2年으로한다.

第13條【特殊加重】이法,軍刑法第13條·第15條또는刑法第2編第1章內亂의罪·第2章外患의罪를犯하여禁錮以上의刑의宣告를받고그刑의執行을終了하지아니한者또는그執行을終了하거나執行을받지아니하기로確定된후5年이경과하지아니한者가第3條第1項第3號및第2項내지第5項,第4條第1項第1號중刑法第94條第2項·第97條및第99條,同項第5號및第6號,第2項내지第4項,第5條,第6條第1項및第4項내지第6項,第7條내지第9條의罪를犯한때에는그罪에대한法定刑의最高를死刑으로한다.

第14條【資格停止의併科】이法의罪에관하여有期懲役刑을宣告할때에는그刑의長期이하의資格停止를併科할수있다. (改正 1991.5.31)

第15條【沒收·追徵】①이法의罪를犯하고그報酬를받은때에는이를沒收한다. 다만,이를沒收할수없을때에는그價額을追徵한다.

②檢事은이法의罪를犯한者에대하여訴追를하지아니할때에는押收物의べき 또는國庫歸屬을命할수있다.

第16條【刑의減免】다음각號의1에해당한때에는그刑을減輕또는免除한다.

1. 이法의罪를犯한후自首한때
2. 이法의罪를犯한者가이法의罪를犯한他人을告發하거나他人이이法의罪를犯하는것을방해한때
3. 削除(1991.5.31)

第17條【他法適用의排除】이法의罪를犯한者에대하여는勞動爭議調整法第9條의規定을適用하지아니한다.

第3章 特別刑事訴訟規定

第18條【参考人の拘引·留置】①檢事 또는司法警察官으로부터이法에정한罪의参考人으로출석을要求받은者가정당한理由없이2回이상出席要求에불응한때에는管轄法院判事의拘束令狀을發付받아拘引할수있다.

②拘束令狀에의하여参考人을拘引하는경우에필요한때에는近接한警察署기타적당한場所에임시로留置할수있다.

第19條【拘束期間의延長】①地方法院判事는第3條내지第10條의罪로서司法警察官이檢事에게申請하여檢事의請求가있는경우에搜查를繼續함에상당한理由가있다고인정한때에는刑事訴訟法第202條의拘束期間의延長을1次에한하여許可할수있다.

②地方法院判事는第1項의罪로서檢事의請求에의하여搜查를계속함에상당한理由가있다고인정한때에는刑事

訴訟法第203條의拘束期間의延長을2次에한하여許可할수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期間의延長은각10日이내로한다.

第20條【公訴保留】①檢事은이法의罪를犯한者에대하여刑法第51條의事項을참작하여公訴提起를保留할수있다.

②第1項에의하여公訴保留를받은자가公訴의提起없이2年을경과한때에는訴追할수없다.

③公訴保留를받은者가法務部長官이정한監視·保導에관한規則에違反한때에는公訴保留를取消할수있다.

④第3項에의하여公訴保留가取消된경우에는刑事訴訟法第208條의規定에불구하고동일한犯罪事實로再拘束할수있다.

第4章 報償과援護

第21條【賞金】①이法의罪를犯한者를搜查機關 또는情報機關에通報하거나逮捕한者에게는大統領令이정하는바에따라賞金을支給한다.

②이法의罪를犯한者를認知하여逮捕한搜查機關 또는情報機關에종사하는者에대하여도第1項과같다.

③이法의罪를犯한者를逮捕할때反抗 또는交戰狀態下에서부득이한事由로殺害하거나自殺하게한경우에는第1項에準하여賞金을支給할수있다.

第22條【報勞金】①第21條의경우에押收物이있는때에는賞金을支給하는경우에한하여그押收物價額의2분의1에상당하는범위안에서報勞金을支給할수있다.

②反國家團體나그構成員또는그指令을받은者로부터金品을取得하여搜查機關 또는情報機關에제공한者에게는그價額의2분의1에상당하는범위안에서報勞金을支給할수있다.反國家團體의構成員또는그指令을받은者が제공한때에도또한같다.

③報勞金의請求및支給에관하여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3條 【報償】 이 법의 罪를 범한 者를 中告 또는 逮捕하거나 이에 관하여 傷病을 입은 與와 친구와 같은 者의 遺族은 大統領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有功者 程遇 등에 관한 法律에 의한 公傷軍費 또는 殉職軍費의 遺族으로 보아 報償할 수 있다. (改正 1991. 5. 31)

第24條 【國家保安有功者 審査委員會】 ①이法에 의한 賞金과 報勞金의 支給 및 第23條에 의한 報償對象者를 審議·決定하기 위하여 法務部長官소속하에 國家保安有功者 審査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1991. 5. 31)
②委員會는 審議上 필요한 때에는 關係者の 출석을 要求하거나 調查할 수 있으며, 國家機關 기타 公·私團體에 証會하여 필요한 事項의 보고를 要求할 수 있다.
③委員會의 組織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

第25條 【軍法被適用者에 대한 準則規定】 이 法의 罪를 犯한 者가 軍事法院法 第2條第1項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에는 이 法의 規定 중 刑事는 軍事法院管轄官으로, 檢事는 軍事法院檢察官으로, 司法警察官은 軍司法警察官으로 본다. (改正 1987. 12. 4)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反共法은 이를 废止한다. 다만, 同法 废止前의 行為에 대한 處罰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및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③ (해당 法律에 整理)

④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을 引用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法律에 訓음하여 이 法을 引用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 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

에는 종전의 規定에 訓음하여 이 法의 該當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4條 【經過措置】 ①舊刑法第2編 第2章 内亂에 관한 罪, 第3章 外患에 관한 罪, 舊國防警備法 第32條, 第33條, 舊海岸警備法 第8條의 2, 第9條, 舊非常事態下의 犯罪處罰에 關한 特別措置令,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罪를 犯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는 刑法 第2編 第1章 内亂의 罪, 第2章 外患의 罪, 刑法 第13條, 第15條의 規定 또는 이 法에 의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로 본다. 이 法 施行後에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罪를 犯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도 또한 같다.
②이 法 施行前에 特殊犯罪處罰에 關한 特別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前에 종전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處分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이 法 施行前에 한 反共法의 規定에 의한 賞金 또는 報勞金의 請求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附 則 (1987. 12. 4 ; 軍事法院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8年2月25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第4條 省略

附 則 (1991. 5. 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行為에 대한 處罰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國家保安法의 罪를 범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로 본다.